

청탁금지법 상담기록부

상담일시	2018. 7.	상담장소	감사담당관실
신청자	ㄱㄱㄱ	상담자	청탁방지담당관
상담유형	부정청탁 / 금품수수 / 외부강의 / 기타		
상담내용	<p>(질의)</p> <p>직무와 무관한 워크숍에서 토론의 진행자 역할을 진행할 경우, 이를 외부강의로 보아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</p> <p>(답변)</p> <p>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.(법 제10조 제1항)</p> <p>따라서,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.</p> <p>한편, 진행의 경우 단순히 행사 등의 진행을 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 등의 형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,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회의 등에서 진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 등의 형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/p>		
비 고			